

제 10 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 11 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1.

나. 제 안 차 : 부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2.

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

○ 우리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. 5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것임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이사철(李思哲) 변호사 추천

6. 소수의견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추천변호사 인적사항

성 명	이사철(李思哲)	생년월일	1952. 9. 15 (43세)
본 적	경기 부친	주 소	서울 서초구 방배동(경남6-306)
사무소	부천시 원미구 상동 450N블럭 76 유광빌딩2층(TEL : 324-5000)		
학 력	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		
주 요 경 력	1974 제16회 사법시험 합격 1976 사법연수원 수료, 육군법무관 1979 수원지방법검찰청검사 외 5개 지검 검사 1990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검사 1991 법무부 검찰제2과장 1993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장검사 (범인신세기종합)		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부천시 관내개업 변호사는 총 26명으로써 그중에서 판·검사 경력의 변호사는 8명이며, 이중 판·검사 경력이 14년이며, 연령도 43세로서 왕성한 사회활동 적령기에 들어서 있고 부친출신인 이사철(李思哲) 변호사 추천

고문변호사추천요구안

의안번호	382
의 결 년 월 일	95. 5. 30 (제 38 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5. 11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우리시 위촉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95. 5.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 정수의 2분의 1을 시의회에서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천 요구하는 것임

□ 주요골자

- 추천요구인원 : 1명
○ 자 격 요 건 : 개업중인 변호사
<근거법규>
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2조 제1항

부천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결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5. 18.
나. 제 안 자 : 부천시장
다. 회부일자 : 1995. 5. 18.
라. 상정일자 : 1995. 5. 22.

2. 제안설명요지

- 가. 제안이유
○ 시정소식지발행 편집주간 및 보조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근거가 없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
- 나. 주요골자
○ 편집주간과 보조원에게 지급하던 보수 및 수당 이외에 복리후생비를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토록 함.
(안 제8조 제3항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 음	없 음

4. 토론요지